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2024. 6. 20.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59호로 2024년 5월 31일 이성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교직원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제5조)

다. 지원사업 및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 제7조)

라.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4. 6. 3.~ 6. 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보육교직원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정책개발 및 운영, 제도 개선, 재원조달 방안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지원사업)**에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고충상담 및 심리적안정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7조(위원회 설치、운영)**에서는 위원회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실태조사)**에서는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등의 실정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해당 실태조사에 관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결과

- 2020년 [1]한국보육진흥원에서 현직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9.3%가 부당한 대우 등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권익침해 요인으로 “보육교사를 교사로 존중하지 않는 부모들의 인식” 40.1%, “미비한 법과 제도” 25.1%, “보육교사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분위기” 15.1%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보육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인식 개선”이 39.7%, “보육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제도 마련”이 24.7%로 조사되었음.

---

1) 「영유아보육법」 제8조(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이에 따라 서울시 8개의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자치구	조례명
1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
6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8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우리 구에서는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비 등 재정적 지원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우리 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

구분	사업명	금액	대 상	국비	시비	구비
근무환경 개선비	담임교사지원비 (처우개선비)	26만원	영아반 담임교사(0-2세) 혼합반담임교사(2~3세) 월급여형시간연장교사 (6~8시간근무자)	30	49	21
처우개선비	민간,가정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7만원	모든 담임교사 (비서울형) *영아,누리담임포함		50	50
						100
	국공립, 서울형어린이집 처우개선비	21만원	원장		50	50
		16만원	담임교사			100
	누리담임교사 처우개선비	36만원	누리반 담임교사 (3~5세)		100	
	영아전담	21만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50	50

	처우개선비	16만원	원장,담임			100
	국공립 근무지원수당	3만원	원장, 담임교사			100
	민간, 가정 원장 수당	7만원	원장			100
	근속수당	3만원/5만원	3년이상 근속 담임교사			100
	보육교직원 명절수당	5만원	원장, 담임교사			100
						100
	장애통합어린이 집 수당	30만원 / 10만원	장애통합어린이집 원장, 교사			100
보조교사 (인건비)	**국비지원 보조교사**	1,068,000원	영아반 보조교사	30	49	21
	국비보조교사 2H추가	534,000원	영아반 보조교사		50	50
	보육도우미(시비)	1,601,320원	보육도우미		50	50
	연장보육 전담교사	1,068,000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30	49	21
대체교사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93,690원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하는 대체교사 (어린이집으로 지원)	30	49	21
교육비	**승급교육, 직무교육비**	직무8만원 승급7만원	보수교육을 받은 보육교직원	30	49	21

-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기본 및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복리 증진 등 다양한 지원 사업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입법 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3. 8. 13., 2023. 12. 26.>

②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어린이집,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23. 12. 26.>

③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0. 17.] [시행일: 2024. 6. 27.]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생 략)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7.9, 2011.12.8, 2012.2.3, 2012.6.29, 2013.12.4>

1. 삭제 <2012.6.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9.15>
8. 삭제 <2012.6.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1. 12. 8.>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전문개정 2009. 6. 30.]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제5조(설치 및 기능) 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 12. 8., 2013. 12. 4., 2019. 6. 4.>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 7. 9., 2011. 12. 8., 2012. 2. 3., 2012. 6. 29., 2013. 12. 4.>

1. 삭제 <2012. 6. 29.>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5. 9. 15.>
8. 삭제 <2012. 6. 29.>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